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2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현황	4
2. 총괄검토: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10
3. 조문별 검토	15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대상 확대	15
나. DB·DC 및 IRP의 기금형 운용 허용 등	22
다. 퇴직연금기금 운용체계 구축	42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등	53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2일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제2의 연금’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연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집합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안 제2조제14호, 제23조의3제3항)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함.

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안 제2조제17호 신설,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함.

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13조제1항)

현행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운용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가 집합하여 이를 수행하기에 이와 같은 의무를 면제함.

바.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선택 권한 부여(안 제23조의6, 제23조의15)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는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이 중에서 자유로이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하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려는 것임.

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4조제1항·제2항 등)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함.

IV. 검토의견

1.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현황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구성됨.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제도로써 도입되었으며(1961년, 30인 이상), 이후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¹⁾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사외(社外)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1)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 확대 연혁

관련법령 공포일	사업규모	적용기간
1962. 3. 4. (영)	30인 이상	1962. 3. 4. ~ 1975. 4. 27.
1975. 4. 28. (영)	16인 이상	1975. 4. 28. ~ 1987. 12. 30.
1987. 12. 31. (영)	10인 이상	1987. 12. 31. ~ 1989. 3. 28.
1989. 3. 29. (근로기준법)	5인 이상	1989. 3. 29. ~ 2010. 11. 30.
2005. 1. 27. (퇴직급여법)	5인 이상	2005. 12. 1. ~ 2010. 11. 30.
2011. 7. 25. (퇴직급여법)	1인 이상	2010. 12. 1.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되고,²⁾

이와 별개로 ④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2)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DB, DC를 갈음하여 사용자가 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 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 자 등 소득이 있는자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규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①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IRP)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³⁾)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계약형**과 ②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DB, DC, IRP는 계약형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중퇴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임.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구 분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개 관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 외부위탁
운용감독	금융기관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3)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근로자 가입률>

연도	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인 미만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2020	사업장 도입률	10.6	32.7	56.3	24.0	73.0	80.5	85.5	90.8	27.2
	근로자 가입률	11.9	29.6	47.2	33.2	55.1	59.5	66.4	69.1	52.4
2021	사업장 도입률	10.6	33.1	57.1	24.0	73.0	80.4	87.0	91.4	27.1
	근로자 가입률	11.8	30.2	48.3	33.6	56.3	60.8	68.5	70.7	53.3
2022	사업장 도입률	10.5	32.9	57.3	23.7	73.0	80.7	87.3	91.9	26.8
	근로자 가입률	11.9	30.0	48.6	33.5	56.6	61.0	68.9	70.5	53.2
2023	사업장 도입률	10.4	32.3	56.8	23.2	73.5	81.3	87.6	91.7	26.4
	근로자 가입률	11.8	29.5	48.2	33.1	56.2	60.8	68.7	70.2	53.0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중퇴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3년 기준 382조 4천억원이고,⁴⁾⁵⁾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205조 3천억원, 확정

4) 중퇴기금제도(0.5조원) 포함 시 382조 9천억원임.

5) 타 연기금 규모(2023년): 국민연금 1035.8조원, 사학연금 26.3조원, 공무원연금 7.8조원

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101조 4천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75조 6천억원이 적립되었음.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적립금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05.3	100.0	101.4	100.0	75.6	100.0	382.4	100.0
원리금보장형	195.8	95.3	83.1	81.9	54.5	72.1	333.3	87.2
실적배당형	9.6	4.7	18.4	18.1	21.1	27.9	49.1	12.8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 총괄검토: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며(안 제2조제6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세부 내용별로, 개정안은 ①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DB, DC, IRP)에서 기금형 운용을 허용하고(안 제18조의2제1항 등), ②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 및 운영·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및 퇴직연금기금의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③ 또한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3개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안 제23조의6 단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가 2년에 1회 이내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4항).

④ 관리·감독 및 공시체계 강화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규정하고(안 제23조의15 및 제23조의1

6),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45조제1의2), 안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

나. 검토의견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산운용 등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DB, DC, IRP)에 해당함.

이때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DB형의 경우 사용자, DC·IRP의 경우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의 수준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적고, 근로자로서는 제한적인 금융지식, 노후자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⁶⁾⁷⁾

6)“DC형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소규모 펀드의 난립과 금융지식이 낮은 가입자의 역선택이 수익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기금형 제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분산투자와 전문적인 지배구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노·사의 입장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탁법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연금을 관리함에 따라 노·사중심의 연금관리 및 운용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연금의 사외적립이 회사와 독립된 기금의 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신성환, 송인옥, 이태호. (202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과 기금수익률 비교. 경영학연구, 51(2), 287-301. 10.17287/kmr.2022.51.2.287

7) 학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저소득근로자 적용 확대해야”, 연합뉴스, 박성진기자,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하고,⁸⁾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임.

이러한 개정안은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
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도별 적립금 비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DB의 경
우⁹⁾ 구조상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높이기 어려운바, 퇴직연금기금제도
의 도입으로 수익률이 무조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DB형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시점에
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종료되므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크지 않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
급여로 받게 되어,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퇴직급여액은 변

2025.6.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3052100530> 등

8) 이때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함.

9) DB가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023년말 기준 53.7%, 2024년말 기준 49.7%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함.

동되지 않으므로 역시 적립금 운용에 관여할 유인이 크지 않음. 이렇듯 노사 모두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 수익률 개선이 가능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하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수익률 개선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음.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음¹⁰⁾. 이러한 지급구조에서 적립금 수익률이 확보되지 않으면 퇴직급여 지급 부담 때문에 기업은 도산¹¹⁾하게 되고,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힘을 합쳐 장기적·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적립금 수익률을 제고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은 구조적 특성상 적립금 운용 주체와 운용손익의 귀속주체가 상이한데, 이로 인하여 원금 손실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퇴직급여의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및 사회보장적 측면¹²⁾¹³⁾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10) 다만, 최근에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지급 부담이 증가하면서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

11)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관대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막대한 퇴직연금부채는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델타항공 등이 파산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12)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DB, DC 등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운용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의 타당성 및 기금운용체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있는바 이하에서 각 논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음.

고용노동부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형 도입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구조와 이해관계 그리고 노동자 수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미 시행 중인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성과 분석 및 연구용역,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추진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관련된 사항은 세부 검토 사항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음.

13) 2013므2250 판례는 퇴직급여법 제정 이후의 판례로, 퇴직급여법 제정 이전 판례 역시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판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회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977판결)” 등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주해Ⅱ」, 노동법실무연구회, 2020, 705쪽 참고

3. 조문별 검토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대상 확대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6. ----- ----- -----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u>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u> 근로자의 안	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 설>

15. · 16. (생략)

<신 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

-----.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15. · 16. (현행과 같음)

17.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u>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u>에 한정한다) 7. (생략)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중소기업</u>----- 7.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중소·영세기업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곤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던바, 2022년 9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를 도입하였음.¹⁴⁾

중퇴기금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중퇴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이 부담금을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38호, 2022. 4. 14. 시행) 개정이유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임에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초과 사업장에 근무하여 중퇴기금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¹⁵⁾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퇴기금 가입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⁶⁾

이에 개정안은 중퇴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사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¹⁷⁾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중퇴기금의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15) 아시아경제,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달라...사각지대 근로자 품어야"[이슈인터뷰], 김평 화기자, 2025.4.8.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0808205821835>

16) 자본시장연구원,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남재우, 2025-03호

1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적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도 중퇴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을 통해 중퇴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기금의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자산관리기구(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장기적·집합적·전문적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 운용 성과의 제고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중퇴기금 가입 대상의 적정 확대 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를 기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자산총액·평균매출액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함.¹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2024.8.)’에 따르면, 99인 이하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수와

1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① 규모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② 독립성 기준으로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출 것을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업종별 평균매출액은 [참고]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중퇴기금 가입 대상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종사자규모별 중소기업 기업 수·종사자 수 및 매출액현황]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기업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전체	8,042,726	(100.0)	18,956,294	(100.0)	33,090,291	(100.0)
1인	6,149,597	(76.5)	6,149,597	(32.4)	5,439,899	(16.4)
2~9인	1,660,149	(20.6)	5,539,431	(29.2)	12,044,721	(36.4)
10~99인	222,990	(2.8)	5,086,206	(26.8)	12,619,691	(38.1)
100~499인	9,432	(0.1)	1,668,685	(8.8)	2,752,244	(8.3)
500인 이상	558	(0.0)	512,375	(2.7)	233,738	(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8.

둘째,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중퇴기금으로 제도를 변경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의 '2023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30~4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3.5%, 50~9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3%임. 개정안과 같이 중퇴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중퇴기금이 타 제도보다 비용효율적이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DB형/DC형 등) 가입 사업장이 중퇴기금으로 제도를 변경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기존 퇴직연금제도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보험회사·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바, 민간의 퇴직연금 시장 구축(驅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이 필요한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생명보험협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은 재정 부담과 수익률 검증 부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도입률 개선 및 수익률 제고 등 효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인 가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확대는 공공에서 시장실패가 아닌 영역에 진출하여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DB·DC 및 IRP의 기금형 운용 허용 등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DB, DC, IRP)에 기금형 운용방식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임.¹⁹⁾

이에 따라 ① DB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의무가 면제되고(안 제18조의2제1항), ② DC와 IRP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 제 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이 면제됨(안 제21조의5 신설). ③ IRP의 경우 기존 IRP 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포함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짐(안 제24조제1항 등). 다만, 개정안은 IRP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제외하고 있음(안 제24조제4항).

또한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 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용자는 3개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가입자가 2년에 1회 이내 범위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전문

19)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현행 DB, DC, IRP에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정안 각 조항은 DB, DC, IRP에서 퇴직연금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본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은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DB, DC, IRP)에 기금형 운용방식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임.”이라 설명함.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각 제도별 기금형 운용 도입에 대한 법문언 구체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함.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3조의6).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6. ----- ----- -----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u>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u>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 ----- ----- ----- ----- ----- ----- -----.
<신설>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u>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u>

15. · 16. (생 략)

<신 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
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 략)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
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한다.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
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
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
한다.

15. · 16. (현행과 같음)

17.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
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
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
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
----퇴직연금기금제도-----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
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금기금제도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퇴직연금기금제도-----

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
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
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 11. (생략)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④ (생략)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
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
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
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
로 본다.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1.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기
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제도
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정-----

2.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
정등-----.

-----.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⑤ (생략)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

-----사용자(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⑦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의 예외) 퇴직연금기금제도 에 가입

③ (생략)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제도-----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 이상(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하나로 본다)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선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공단은-----

<신 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_____.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퇴직연금기금제도-----

-----퇴

직연금기금제도-----

-----퇴직연

금기금표준계약서-----

_____.

② 사용자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3조의8(<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 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u>공단</u>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u>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생략) 제23조의9(가입기간) <u>중소기업퇴직</u>	②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8(<u>퇴직연금기금제도</u> 가입자 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 ----- ----- ----- ----- ----- ----- ----- 1. <u>퇴직연금기금제도</u>----- -----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9(가입기간) <u>퇴직연금기금</u>
---	--

<u>연금기금제도를</u>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 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u>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u>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로 본다.	<u>제도</u>----- -----. ----- -----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u>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u>----- ----- -----<u>퇴직연</u> <u>금기금제도</u>-----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u>퇴직연금기금제도</u>----- ----- -----<u><후단 삭제></u>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1. ----- ----- -----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2. (생략)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생략)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제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2. (현행과 같음)

②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
정등-----.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퇴
직연금기금제도-----

-----.

1. -----

----- 퇴직연금기금제도 -----
-----.

2. -----

----- 퇴직연금기금제도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생략)

③ (생략)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생략)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입자부담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퇴직
연금기금제도-----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생 략)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생 략)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

1. (현행과 같음)
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3. (현행과 같음)
4.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
정등-----, -----

5. (현행과 같음)
③ -----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
---, -----

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 ~ ③ (생략)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u>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 -----.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u>----- -----. ----- ----- -----. ⑤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퇴직연금(DB, DC, IRP)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계약형 운영방식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가입자인 근로자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고²⁰⁾, 연금수급권자인 근로자와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이익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²¹⁾ 및 적립금 운용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과도

20) 한국채권연구원,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과제)」, 2015.10

하게 집중되어 있고²²⁾ 수익률이 저조²³⁾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며, 가입자의 투자 의사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퇴직연금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DB, DC, IRP)에 기금형 운용방식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은 가입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제한적인 금융지식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연금 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제도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DB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DB형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⁴⁾

21) 이태호, 「우리나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2013.2

22) ('원리금 비중/수익률, '24년) ▲(DB) 93.1%/4.04% ▲(DC) 76.6%/5.18% ▲(IRP) 66.5%/5.86

23) (연도별 수익률) ▲('20년) 2.58% ▲('21년) 2.00% ▲('22년) 0.02% ▲('23년) 5.26%
▲('24년) 4.77%

24) DB형의 경우 안 제13조제1호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8조의2에서도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의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해석상 DB형도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문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DB형을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가능함을 명시하는 등의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금형 퇴직연금의 주된 도입 취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²⁵⁾되어 수익률 제고의 유인이 낮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의무가 종료되므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크지 않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되어,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퇴직급여액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역시 적립금 운용에 관여할 유인이 크지 않음. 이렇듯 노사 모두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 수익률 개선이 가능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2024년말 기준 운용방법별 적립금 현황을 보면, DB형 적립금 중 93.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에 DB형에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말 기준 운용방법별 적립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DB		DC		IRP		전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14.6	100.0	118.4	100.0	98.7	100.0	431.7	100.0
원리금보장형	200.6	93.2	90.8	76.7	65.6	66.5	356.5	82.6
실적배당형	14.6	6.8	27.6	23.3	33.1	33.5	75.2	17.4

자료: 고용노동부

25)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DC형·IRP형의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의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전문운용사가 일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제외에 따른 가입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임. DC형·IRP형에 개정안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립금이 집합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이러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적용의 제외는 타당하나, 기존 DC형·IRP형과 달리 개인이 운용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운용 실패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23조의6제4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²⁶⁾ 현행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opt-out)함을 고려하면

26) 안 제23조의6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히려 근로자의 선택이 현행제도 하에서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도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기금형의 경우 계약형과 달리 ‘제3자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지만 그 수익·손실이 그대로 가입자에게 귀속되
는 제도로 계약형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수탁자 책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장임.

또한 안 제23조의6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근로자의 선
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내로 근로자의 기금 변경 권한
을 제한하고 있으나 오히려 2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사용자가 체결해야 할 사업자 수에 일률적 하한(3개 이상)을 설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설정 부담을 높이고 오히려 퇴직연금사업자간
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생명보험협회는 ① DB형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해외 사례²⁷⁾는 모두 DC
형이고, DB형의 경우 기금손실 발생시 퇴직급여 지급권이 훼손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DB형까지 기금형 확대 여부는 DC형에 기금형을 우
선 도입하여 성과와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히 검토하는 것

27) 영국 Master Trust, 호주 Super Annuation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② 기금형은 적립금 운용 권한과 운용결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 발생시 필연적으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앞서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퇴직연금기금 운용체계 구축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이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함.

또한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통령령상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6. ----- ----- -----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u>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u>	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 ----- ----- ----- ----- ----- -----.
<신설>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u>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u>

15. · 16. (생략)

<신설>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15. · 16. (현행과 같음)

17.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장의2 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28)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 4. (생략)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

-----.

1.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대표 또는 공단의 상임이사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퇴직연금기금-----

2.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3. (현행과 같음)

4. -----퇴직연금기금제도-----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생략) <u>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u>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⑦ -----<u>퇴직연금기금</u>----- ----- -----. ⑧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3(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u>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
--	--

	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기 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공단의 퇴 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기금운용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개정안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러한 개정안은 집합투자에 가까운 형태로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예컨대 별도의 수탁법인 설립없이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기금 수탁법인으로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되, 실제 적립금

28) (자구) 안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의 자구 수정 필요

의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적 운용과 수익 증대를 위하여 그 역할을 전담할 금융기관을 선별적으로 인·허가하여 수탁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금융기관이 퇴직연금기금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임.

이에 따라 조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는 추가비용 없이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입자의 접근성도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금융시장 구조를 활용하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방향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퇴직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퇴직연금 외의 다른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에 두고 있는데, 퇴직연금사업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대표이고, 운영위원회는 사업자가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됨을 고려할 때 이해상충 방지 및 적립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3조의3제5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넓다는 점, 자본시장금융투자업의 인가 등 관련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조제13호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법 제26조²⁹⁾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 각 호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의 범위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임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까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업역 확대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개정안의 논의

29)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의 면밀한 사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기금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³⁰⁾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전문운용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2021. 12. 21.>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공제조합
 - 나. 공제회

가 기금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해당 자산에 대한 보관·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자본적정성, 자산건정성, 리스크관리체계 점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외부 감사 등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수행하는 기능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및 수탁자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관련한 공단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타 퇴직연금기금과

-
-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27.>
-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1. 4. 20.>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달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에서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성격이 있어 현행과 같이 고용노동부 관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의 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함.

고용노동부는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거버넌스 및 강력한 외부 감독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나,³¹⁾ 현 개정안의 경우 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및 수탁자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의무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기금형의 경우 수탁 법인이 기금 운영·관리에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형과 동일하게 번들형(기금운영과 보관의 기능을 동일 기관이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기금형의 경우 사실상 제3자에 의한 금융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수행하는 핵심적 기능들이 미비한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1) [OECD 연금 거버넌스 핵심 원칙(고용노동부 제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확한 법적 기반과 기금운용 주체의 책임 확보 ② 수탁자책임 및 가입자 이익 최우선 (이해상충 방지) ③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④ 장기적 투자 관점의 효과적인 투자 거버넌스 구축(명확한 투자목표, 전략, 자산배분 원칙이 포함된 투자정책 수립 체계 + 정기적 검토) ⑤ 적극적 정보공개로 통한 투명성 확보(운용현황, 포트폴리오, 수익률 등) ⑥ 강력한 리스크 관리 및 외부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⑦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감독 당국의 금융 전문성 확보) |
|---|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등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로 기금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교육 실시,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및 가입자에 대한 제공 등을 규정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사업자에게 보고를 듣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벌칙으로 안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5(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 ----- -----.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④ -----퇴직연금사업자-----

-----.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

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연금사업자가-----

-----.

1.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제도-----

2.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

3.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

2. ~ 4.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신설> 1의4. (생략) 2. ~ 5. (생략) ③ (생략)	<u>한자</u> 2. ~ 4.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한 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개정안은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기금 운용을 가능케하려는 실효성있는 지도·감독 및 제재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3조의15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35조³²⁾에서 이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바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계상 수정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개정안에

32)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따를 경우 제23조의15제1항 및 제2항 책무 위반으로 구분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안 제48조도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되는바,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재함.

둘째, 안 제23조의16은 ‘퇴직연금기금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기금운영의 적정성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문언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수탁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거버넌스(의사결정,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간 상호견제 등) 및 강력한 외부 감독체계가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형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수탁자 책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